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302
----------	------

발의연월일 : 2017. 8. 1.

발의자 : 이은권 · 김성원 · 배덕광
윤상직 · 윤상현 · 김성찬
홍문표 · 김승희 · 신상진
박찬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고,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뇌물 수수 등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항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 ⑤ (생 략) ⑥ 위원은 <u>자격정지 이상의 형</u> <u>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u> <u>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u> <u>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u> <u>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u> <u>아니한다.</u> <u><신 설></u>	제2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u>다음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u> ----- ----- ---.
<u><신 설></u>	1. <u>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u> <u>받은 경우</u>
<u><신 설></u>	2. <u>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u> <u>수 없게 된 경우</u>
<u><신 설></u>	3. <u>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u> <u>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u> <u>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u> <u>인정되는 경우</u>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